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 



#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2021. 2.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문화과]

# 목 차

I. 추진배경 및 추진근거 .....	1
II. 추진원칙 .....	1
III. 추진방향 .....	2
IV. 세부 운영기준	
1. 학생봉사활동 기본 소양 교육 강화 .....	3
2. 학생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4
3.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5
4. 학생봉사활동 절차 .....	7
5. 학생봉사활동 유의사항 .....	10
V. 행정 사항 .....	10
[덧붙임]	
1. 학생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인정 기준(예시) .....	11
2. 2015개정교육과정 내용 .....	13
3. 학생봉사활동 인정 및 인정 불가 기준 .....	14
4. 학생봉사활동[가정통신문] 작성 시 참고사항 .....	18
5. 자주하는 질문[FAQ] .....	19
6. 봉사활동 각종 서식 .....	22
7.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안내 .....	27
8.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8

# I. 추진배경 및 추진근거

## □ 추진배경

### 추진 배경

- » 2015 개정교육과정 봉사활동 영역의 다양화·내실화 추진
  -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안내와 지원체제 강화 필요
- »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행정안전부)과 연계하여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 수립 필요

## □ 추진근거

- » 「초·중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행정안전부, 2018~2022)
-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1)
-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3.)

# II. 추진원칙

- 학교 실정에 맞게 학생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추진 권장
- 학생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党性), 비종파성(非宗党性)의 원칙 아래 수행
- 단위 학교별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학생봉사활동 내실화

### III. 추진방향

#### 목표

나눔과 배려의 인성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

#### 실행

- ❖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운영

#### 추진 방향

- ❖ 자기 주도적 학생 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강화

-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

- ❖ 일관성 있는 학생 봉사활동 운영 방향 제시

-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절차, 기본 인정 기준 및 내용별 인정(예시) 안내

- ❖ 봉사활동의 편성·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

- 단위 학교별 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강조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 IV. 세부 운영기준

### 1 학생봉사활동 기본 소양 교육 강화

#### □ 학생 대상 봉사활동 소양 교육 실시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근거한 자발적 실천 강조
  -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실시
  - 학기 초 및 방학 직전 등 연중 수시로 교육 실시
-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
  - 학생의 적성 및 진로 등을 고려한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의 실천 강조
  - ※ 시간 확보를 위한 단순 봉사활동 및 일회성 봉사활동 지양
- 교육공동체를 연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강화
  - 지역 봉사활동 기관과의 연계 및 학급, 동아리, 가족 중심의 봉사활동으로 확대

#### □ 학생·학부모 대상 봉사활동 홍보 및 사전 확인 강화

- 단위 학교의 봉사활동 인정 기준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 연수,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연중 수시 홍보
  - 봉사활동의 취지와 목적, 인정 기관 및 시간, 원칙 등 적극 안내
  - ※ 학기 초 충분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민원발생 사전 예방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인정기관인지 학교에서 사전 확인 강화
  - 특히 활동비를 내고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사전 확인 철저

## 2

## 학생봉사활동 시간 인정기준

### □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기관·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사전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지도 활동 등) 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 추진

### □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구분	평일 (수업이 있는 평일)	휴업일(토·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인정시간	학교 수업시수에 따라 변동	8시간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인정대상시간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시·도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3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단위 학교 중심의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운영

-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운영 계획 수립
- 학교·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 인정기관 발굴 및 안내
- 봉사활동이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소양교육(봉사의미, 교통안전, 응급처치 등)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연간 2시간, 필요 시 원격 실시 가능)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1~3단계> 기간 중 ‘봉사활동 운영 변경 계획’ 사전 수립 후 실시한 비대면 활동\*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으로 인정

\* 봉사활동 관련 교육 영상 시청(원격 포함) 및 기타 학교장이 인정한 비대면 활동

□ 단위학교 중심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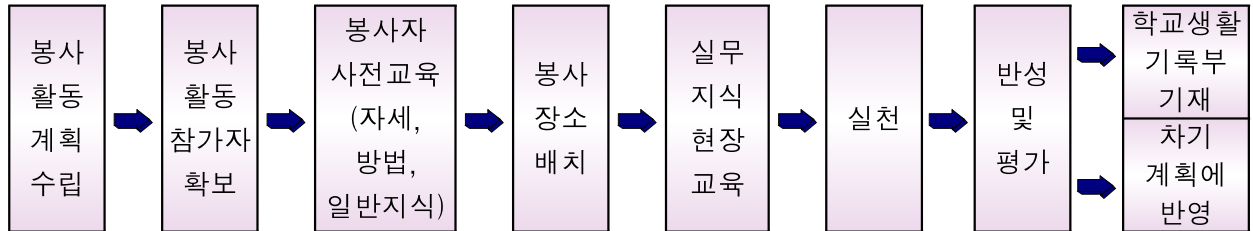
- 각급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 3. 2. 제정)를 근거로 운영할 것, <덧붙임8> 참고
-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해당 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교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
  -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함
  -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 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은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름 등
-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의 수립, 지원 및 평가
  -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
  - 학생봉사활동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 예시나 기준이 없는 학생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위원회 회의)
  - 정기회는 학기별 1회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음
  - 임시회는 위원장과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함
  -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후 보관 등



## 4

## 학생봉사활동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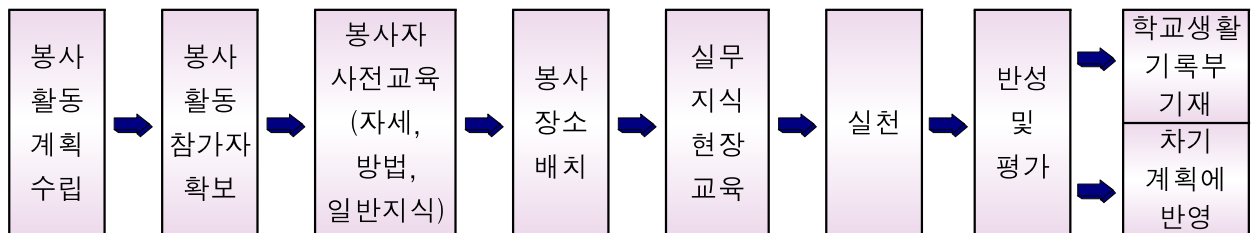
### □ 학교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절차



- (단위)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 학급, 동아리 단위로 운영 가능
- (권장사항) 학교 대청소 등 의무적인 일상적 활동은 지양, 봉사활동 특색 프로그램 개발·운영 권장
- (인정불가 사항) 학급단위 이상의 모든 학생이 교대로 수행하거나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교내 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

※ 예) 별도의 도우미를 선정하지 않고 순번제로 교대로 이루어지는 급식도우미 등

### □ 학교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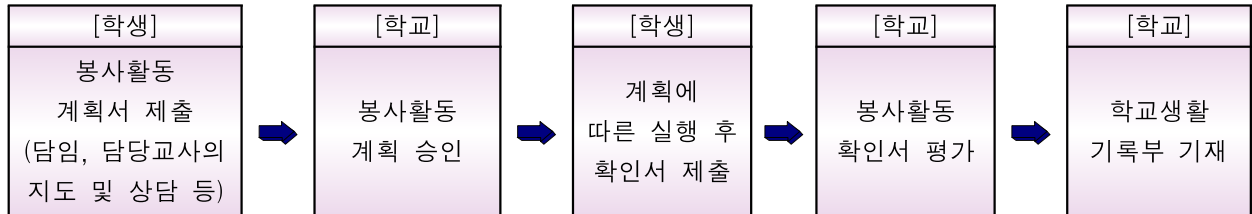


- (인정가능 사항) 학교의 공식행사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방학 중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교내 봉사활동은 인정
- (유의점) 특정 학생에게 시간이나 활동이 몰리거나, 특정 기간에 봉사활동이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인정기준을 설정하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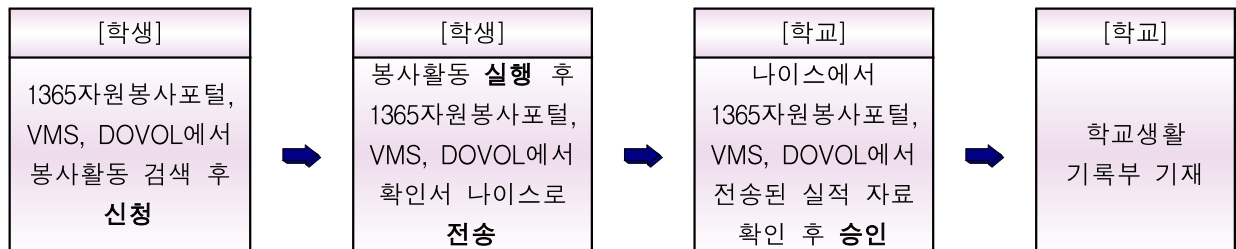
※ 예) A학생이 방송도우미와 정보화기기도우미를 같이 하는 경우, B학생이 1년 동안 급식도우미를 계속하는 경우 등은 지양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DOVOL(청소년자원봉사)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DOVOL(청소년자원봉사)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 1365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실적 연계 사이트(1365,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실시 전 담임(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봉사활동 실적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또는 봉사활동 실적 나이스로 전송
  - (개인 계획) 봉사활동 실시 후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기관으로부터 활동 내용을 확인받아 담임교사에게 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확인서) 봉사자 성명, 소속,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및 평가 의견, 확인자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 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 번호 포함

※ 발급 기관의 사정으로 발급 번호가 미기재 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발급 기관에 확인 후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인정 여부 결정

- (양식 공유) 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은 학교에 항시 비치하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
- (연계사이트를 통한 개인 계획)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 전송된 내용을 지도 교사가 확인 후 승인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실적 연계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제외 후 반영

- 우리 교육청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봉사활동 실적(기관 및 내용 등)
-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와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 1일 8시간(수업시간과 봉사활동 합산 시간) 기준 초과 시간
- 허위 봉사활동 실적

- (봉사영역)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3가지 영역) 중 한 가지를 입력

□ 학생봉사활동 평가

-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 체크리스트, 소감문, 발표,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협의 실시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예시)

기 준	평가 관점(예시)
참여도	• 활동에 대한 참석 정도, 실천의 지속성 등
협력도	• 집단 활동에의 기여 정도, 실천 활동에 대한 협동성, 협력의 지속성 등
열성도	•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활동에 대한 책임감, 적극성, 자기 주도성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5.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 나. 평가 - (1) 학생 평가 - (나) 평가 관점과 평정 척도  
 ②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한다.

## 5

### 학생봉사활동 유의사항

- 시교육청에서 시행한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단위학교별 학생봉사활동 연간계획을 수립·운영하며, 타기관 등의 봉사활동 실적 인정 안내 요청 시 충분히 검토한 후 안내
- 단위학교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학년 초 교사 연수 시 자세히 안내하여 학생봉사활동 실적 인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단위학교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봉사활동 각종 서식을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

## V. 행정 사항

### 1

#### 학교

-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3월 중)
- 단위학교 봉사활동 추진 계획 수립 및 교원 연수 실시(3월 중)
- 봉사활동 안내: 학생, 학부모 대상 홈페이지 게시 및 가정통신문 발송

### 2

#### 시교육청 각 부서 및 교육지원청

- 지역 내 봉사활동 수요처 발굴 노력
- 단순 참여를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봉사활동 이용한 행사 기획 지양
- 정부부처 및 각종 기관에서 봉사활동 수요 요청 시 인정 여부 검토 후 안내

**【봉사활동 기관에서 활동영역 구분 입력 방법】**

지역사회봉사활동(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으로 구분하여 입력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웃돕기 활동)	지역사회 개발발전	집짓기, 수리 보조(전기 및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도색 등)	6시간
		공동체 마을만 들기, 아파트 공동체 실천 활동, 주민자치활동	4시간
		농촌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4시간
		알뜰시장 및 벼룩시장 봉사활동	4시간
		지역사회 바자회	3시간
		꽃길 가꾸기, 놀이터 보수 활동	4시간
		지역행사 지원활동	6시간
	문화, 관광, 예술, 체육 진흥	문화재·관광 가이드, 문화해설	4시간
		문화예술시설 견학안내	3시간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활동	4시간
		문화체험, 취약아동 대상 수련활동 보조지도	4시간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보조)지도자 활동	4시간
	민주시민 사회구현	여성차별개선활동, 아동인권보호활동	3시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3시간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분야 봉사활동	4시간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4시간
		선거관련 봉사활동	4시간
	민원안내, 업무보조	공공기관 내 민원 안내, 사무협력, 서가정리	3시간
		장애인 및 노인 민원 접수 보조 및 안내	4시간
		병동 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3시간
		헌혈자 접수 및 안내	4시간
		김장김치 만들기	4시간
		나들이 보조	4시간
		노인·장애인 수발	4시간
		노인 놀이, 말벗 봉사	3시간
		도시락, 밑반찬, 물품 배달	4시간
		급식소 봉사활동	4시간
		보육, 음식조리	4시간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4시간
		청소, 빨래, 주변 환경 정리	4시간
		식사보조	4시간
		목욕 봉사활동	4시간
		체육 보조 활동	4시간
		국제기구 및 단체 지원활동	4시간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행사 지원활동	4시간
	일손 돕기 재능 나눔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4시간
		이·미용 봉사활동	4시간
		통·번역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4시간
		장애우 점자입력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교통 안전 활동	등하교 횡단보도 지도	4시간
		교통안전교육 지도	4시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4시간
	지도활동 재능 나눔	멘토링(멘토링사업 참가자) 활동	4시간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지도	4시간
		교육관련 지도활동(예술, 컴퓨터, 언어 등)	4시간
	위문공연 재능 나눔	교도소, 감호소 위문(공연)활동	4시간
		공연 봉사활동	4시간
	재난관리, 구호활동	피해복구활동	6시간
		피해복구참여자 대상 급식활동	6시간
		피해지역 현장사무소 업무보조	6시간
		북한동포돕기 활동	4시간
		재해예방교육 보조지도	2시간
		피해지역모니터활동	2시간
	환경 보호활동	환경보호, 시설정비 활동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문화재지역 환경정화활동	4시간
환경감시		환경 보호 모니터링	4시간
캠페인 활동	의식개선 활동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4시간
		헌혈 거리캠페인	4시간
		청소년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4시간
		북한동포돕기 캠페인	4시간
		부정주차금지 캠페인	4시간
		대민안전캠페인 및 재난재해모금 캠페인	4시간
		청소년유해업소 추방 캠페인활동	4시간
		의식계몽활동, 소비자보호 캠페인활동	4시간
		문화재보호 캠페인	4시간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1년 12시간 이내)	1시간
	헌혈	헌혈	4시간

2015 개정교육과정 봉사활동 관련 주요 내용

1) 봉사활동 교육 중점 내용

- (초)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 (중·고) 학생의 취미·특기를 활용한 봉사 실천

2)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활동 집중 편성

4. 편성·운영과 지원 - 가. 편성·운영 - (1) 공통 지침
  - ②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학교 급별, 학년(군)별 시수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 ③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영역별 지침
  - ①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 ②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③ 교외 봉사활동은 가급적 지역 사회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 ④ 봉사활동은 학교나 지역 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초등학교의 교외 봉사활동은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⑥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내 봉사활동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외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중·고등학교의 교외 봉사활동은 사전 교육과 사후 평가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봉사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이웃돕기 활동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돕기활동- 학습이 느린 친구 돕기, 장애 친구 돕기 등</li> <li>• 지역사회활동- 불우이웃 돕기, 난민 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재능 기부 등</li> </ul>
환경보호 활동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화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 사회 가꾸기 등</li> <li>• 자연보호활동- 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li> </ul>
캠페인 활동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li> <li>•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li> </ul>



◎ 학생의 모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및 단위학교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해 인정함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지라도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위반될 경우 인정 불가
- 사전에 담임 혹은 담당교사와 상담을 통하여 인정 기관,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실시
- 수시로 봉사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 봉사활동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거나 간단한 경우, 입력되지 않은 채 전송된 경우 발생
- 학생이 봉사기관에 봉사활동확인서를 수정 요청하여, 수정된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수정된 봉사활동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미 나이스로 전송한 봉사활동확인서를 수정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재전송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하지만, 수정한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는 것은 가능)
- 띄어쓰기 및 맞춤법 오류, &nbsp;, &apos;, &gt;(폰트오류, 난해한 부호) 등은 수정한 봉사활동확인서 없이 담임교사가 수정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계획서 제출을 생략하는 것에 준해 계획서 제출은 생략

**3. 봉사활동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다른 영역과의 시간 중복**

- 봉사활동 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 다른 영역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후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중복 인정은 불가  
예) 자율활동(체육대회)을 6시간 한 후 봉사활동을 3시간 실시하였다면 1일 8시간만 인정 가능하므로 2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
- 동아리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동아리활동으로만 인정. 다만 봉사활동계획에 의해 동아리활동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였다면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예) 방송반이 창체동아리 활동으로 봉사활동을 하였거나 자율동아리 활동계획에 의해 봉사활동을 하였다면 그것은 동아리활동이며 봉사실적으로 인정 불가. 다만 학교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방송봉사활동 도우미로 활동하였다면 인정 가능



#### 4.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함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의 조건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 병원 :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종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 ※ 사회복지관련 자원봉사수요처를 인증하는 VMS사이트(<http://www.vms.or.kr>)를 통해서 검색이 되는 기관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승인된 기관임 --> 로그인하지 않아도 기관 검색이 가능

#### 5. 민간기관·사설기관에서의 봉사

- 민간기관·사설기관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하고,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 6.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다만 봉사자 개인에게 소비되는 기본 교통비와 식비 수준의 활동비 일부는 허용 가능(학교,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신중히 판단 후 인정 여부 결정)
- ※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사례로 받은 경우는 인정 불가

#### 7. 기부 관련 봉사활동

- (물품 및 현금기부) 단순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불가
- (물품 등의 제작기부)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 봉사시간 인정
- ※ 단,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신청한 **개인계획에 의한 제작기부 봉사활동**의 경우 아래 8번(개인계획에 의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의거하여 봉사시간 인정

#### 8. 개인계획에 의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기준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내 신청한 개인봉사활동의 경우만 적용
-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봉사활동 시간 인정 가능

- ①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사전 제출
- ② 봉사활동 과정 사진(시작 전-실천 중-마무리)이 포함된 활동 보고서 제출
- ③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 여부 확인

※ 계획서 확인 시 학생 안전 및 무보수자발·공익·비영리·비정파·비종파성 충족 유무 확인 후 승인

## 9.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실제 봉사활동 실천(실행)으로 이어진 사전교육,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꼭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된 경우만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필요 시 원격 실시 가능)
- ※ 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봉사활동 계획 변경 후 실시한 학교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의 경우, 실제 봉사활동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은 교육이더라도 봉사시간 인정 가능 (5page 참조)

## 10. 문화 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 11.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는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 ※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일감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일감 등록된 것 등을 의미함

## 12. 행사 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의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 13.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 '선플달기' 작성 최대 1시간 봉사활동 인정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 14. 헌혈

-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연간 3회 이내)
- 헌혈활동이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1일 8시간 이내 원칙에 포함되지 않음
- 사전(사후) 학부모 동의서 또는 학생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 자체 서식을 활용하여 헌혈 봉사 활동 동기, 목적 등 소감 기록
-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음

## 15. 학교에서의 일상 활동

- 교실 및 특별실 청소, 환경미화 등 일상적 학교활동은 인정 불가
- 단, 학교장이 학년 초 봉사활동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학교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

## 16.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 학교교육과정 내에 편성하거나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한 봉사활동 모두 학교생활 기록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당해 학교장 명의로 발급(기안 및 결재)해야 함
- <덧붙임 6> 봉사활동 각종 서식(예시) 참고, 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 17. 현장체험학습 등의 출석 인정 결석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인정

## 18. 졸업식 이후에 실시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봉사활동

- 졸업식 후부터 상급학교 입학 사이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 19. 종업식 이후에 실시한 1·2학년의 봉사활동

- 1·2학년은 종업식 이후 2월 말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2월말까지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학년도 봉사활동으로 입력함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후의 봉사활동실적은 진급처리 이후 다음 학년도에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입력하되, 정정 전 반드시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심의(증빙서류 첨부)를 먼저 거쳐야 함
- 1·2학년 종업식 이후, 다음 학년도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이유로 학년말 봉사활동을 금지하거나 다음 학년도에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20.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 단위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입력함, 단 동일 기관의 같은 내용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

## 21.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한 기타 사례

- |                        |                            |
|------------------------|----------------------------|
| -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및 관련 사전교육  |
| -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 - 결석생의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 -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 -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로 발급된 확인서  |
| -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
| - 인구조사 참여              | -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참여  |
| -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                            |

## 22. 학생이 실무 담당자의 실인만 찍힌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

- 봉사활동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할 수 있음
- 단,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한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승인 조치함

**가정통신문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대구광역시교육청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 중학생의 경우, 고입 내신 성적 산출 시 연 20시간 이상(1년 단위)을 실시하여야 봉사점수가 만점이 됩니다.
-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외 봉사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위학교별 가정통신문 작성하여 안내바랍니다.)*

※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교상황에 적합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시고, 봉사활동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학년 초 학생 대상 교육 시에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 학생이 2~3년 지난 봉사활동 확인서를 가져왔는데 인정가능?**

- 원칙적으로는 정정하지 않게 되어 있음.
- 하지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정정가능, 정정의 사유-내용 등을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발견 학년도 담임이 정정 처리함.

**【문2】 학생(혹은 동아리)이 해당학교에서 인정조퇴를 받고 다른 학교에서 행사를 한 경우 봉사시간 인정 가능?**

- 해당학교 당일 수업시간이 7교시까지 있으면 1시간 인정가능.
- 연습시간은 문화공연준비 기준에 의거하여 봉사시간 부여

**【문3】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일 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인정 할 수 있나?**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예시나 기준이 없을 경우에 심의, 의결하므로 교육부 지침을 벗어나 인정 할 수 없음

**【문4】 교육기관에서 평일 행사에 체험학습(출석인정)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가?**

- 수업시수로 반영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봉사활동 인정가능하며, 행사에 따른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만 인정

**【문5】 6교시 이후에 헌혈차가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이 헌혈을 하였을 경우 인정 시간은?**

-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에 따라 4시간 인정

**【문6】 학생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표는 1일 권장 사항이므로, 봉사활동 인정 기준 시간 변경은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 및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적의 시행

**【문7】 해외 봉사활동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할 수 있는가?**

- 해외 봉사활동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불가

**【문8】 창의적체험활동 관련하여 학생들이 수련시설에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단체 봉사활동 6시간 확인서를 발급 해주었음. 인정할 수 있는가?**

- 학교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의 취지와는 어긋난 것임. 학기 초에 연간 계획을 세울 때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음. 체험활동 중 상당 시간이 봉사활동에 편중된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문9】 학교에서의 일상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인정할 수 없음. 예를 들면 교실 청소 및 환경미화, 특별실 청소 등 학교에서 일상적인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단, 학교장이 학년 초 봉사활동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학교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

**【문10】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중 동아리활동 시간에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활동할 경우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가?**

- 인정할 수 없음
- 봉사활동 시간과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시간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다만, 학년 초 동아리 활동계획 이외의 별도 시간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문 11】 징계 관련 학생 선도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선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학생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할 수 없음)
- 이외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문 12】 보호자동행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기간에 한 봉사활동은 인정이 가능한가?**

- 학교장이 출석 인정한 경우는 학교 밖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업시수 외 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함

**【문 13】 실적연계사이트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경우 모두 인정 가능한가?**

- 실적연계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지라도 「2021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위반될 경우 인정 불가
- 실적 연계 사이트(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이용 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는 봉사활동 분야(프로그램 내용 등)를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실시
- 실적연계사이트에 등록된 기관이 추후 영리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 봉사활동 장려 등의 이유로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도 봉사활동 등록이 가능해 학생들이 미등록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실적연계사이트 이용 시 사전에 담당교사와 상담 등을 통하여 인정 기관, 활동내용 등에 관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 실시

## 붙임 6

## 봉사활동 각종 서식 [예시, 학교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

### 【붙임 6-1】

단체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단체봉사 구분	학교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 ) / 학교교육과정 외 봉사활동 ( )								
인적 사항	○○초·중·고등학교 학년 반 성명 : ○○○ 외 명(총 명)								
봉사활동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봉사활동 기관	○○초·중·고등학교(혹은 기관명)	기관 연락처							
봉사영역									
활동 장소	○○초·중·고등학교								
활동 내용									
봉사활동 참여자 명단									
학년	반	번호	성명	인정시간	학년	반	번호	성명	인정시간
1					18				
2					19				
3					20				
4					21				
5					22				
6					23				
7					24				
8					25				
9					26				
10					27				
11					28				
12					29				
13					30				
14					31				
15					32				
16					33				
17					34				
위 학생들은 위와 같이 단체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 ○ 성명 (인) 확인기관명 : ○ ○ 초·중·고등학교장 (직인)									



【붙임 6-2】

<b>개인 봉사활동계획서</b>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학년)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인적 사항	○○초·중·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 총 ( )시간					
주관 기관						
활동 장소						
봉사 영역	이웃돕기활동( ) 환경보호활동( ) 캠페인활동( )					
활동 내용						
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 (인) ○ ○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해 사용하세요.

【붙임 6-3】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개인형)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프로젝트명						
인적 사항	○○초·중·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 총 ( )시간					
주관 기관						
봉사 장소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월/일)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장소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 (인)						
○○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모듬형·융합형)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프로젝트명						
인적 사항	학 번	성 명	비 고	학 번	성 명	비 고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 총 ( )시간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월/일)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장소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 (인)						
○○ 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4】

(                    ) 봉사활동 소감문	
인적 사항	○○초·중·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신고 일시	20    년 3월    일
신고 내용	○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이나 자신의 배경지식, 경험 등을 활용하여 소감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신고 소감 배운 점, 제안하고 싶은 점 등	

【붙임 6-5】

헌혈 학부모동의서·사후 확인서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인적 사항	○○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헌혈 일시	20    년    월    일, 총 (    )시간					
헌혈 주관 기관						
봉사 영역	캠페인활동					
활동 내용	헌혈(전혈) (    ) / 헌혈(성분헌혈) (    )					
<p>위와 같이 자녀의 헌혈에 동의합니다.</p> <p>20    년    월    일</p> <p>학부모 성 명 :                    (인)</p>						
○ ○ 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6】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협의록 (양식)			
회의 일시	20 . 3. ○○. 00:00	회 의 참석자	위 원 장 : 교감 (인)
회의 장소	회의실		부위원장 : 부장 (인)
회의 안건	20 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심의		위원 : (인) (인) (인) (인)
			기록 : (인)
회 의 내 용			
회의 내용			
의결 내용			

## 붙임 7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안내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1365자원 봉사포털	VMS	DOVOL
운 영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앙 관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 페이지	<a href="http://www.1365.go.kr">http://www.1365.go.kr</a>	<a href="http://www.vms.or.kr">http://www.vms.or.kr</a>	<a href="http://dovol.youth.go.kr">http://dovol.youth.go.kr</a>
경기도 내 센터 구성	경기도자원봉사센터 31개 시군자원봉사센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25개 기초지역관리본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군 센터 없음)
봉 사 활 동 주 영 역	공공, 공익 관련	사회복지 관련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등)	청소년 대상 (작은도서관, 박물관 등)
확인서 명칭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	봉사활동확인서

※ 청소년활동진흥센터(DOVOL)는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k](http://www.youth.go.k))에 흡수

→ 'e-청소년' 사이트 접속하면 '자원봉사 DOVOL' 과 연계됨

(e-청소년 : 전국 2,300여개 공공기관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신고·인증 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 정보, 국제교류 정보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종합사이트)

[시행 2020. 3. 2.] [대구광역시조례 제5395호, 2020. 3. 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학생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중 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봉사활동”이란 대구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공립학교에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해당 학교에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은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명칭)** 위원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의 수립
2. 학교 학생봉사활동 지원 및 평가
3.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
4. 학생봉사활동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5. 예시나 기준이 없는 학생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6.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당 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교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학기별 1회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건,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학교 봉사활동 계획, 학생 봉사 프로그램 현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봉사활동 교육)** 학교장은 학생봉사활동 시행 전에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학교장은 학생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 및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395호, 202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